www.i-sh.co.kr

2019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019. 3. 29.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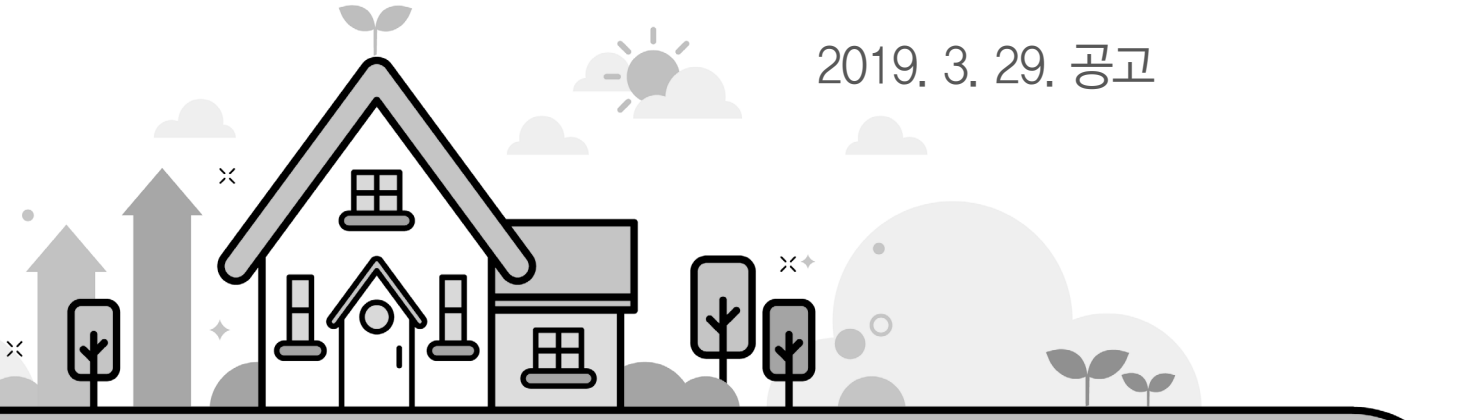

서울주택도시공사

차 례

1. 공급현황 6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17

3. 신청접수 안내 30

4.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33

5. 심사서류 제출안내 34

6. 최대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39

7.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40

8. 계약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41

9. 신청시 유의사항 42

10. 단지 유의사항 안내 43

11. 임대신청관련 문의 44

12. 임대주택 위치 45

2019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019. 3. 29. 공고)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1600-3456)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이 이해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될 수 있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신청 내역은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을 이유로 수정될 수 없사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2019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 ~ 80% 금액으로 차등하여 공급합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 및 심사기준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 신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을 위해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주거약자 등의 고객에 한하여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대행을 합니다.**

– 공사에서의 청약 신청은 인원이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점 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입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청약신청 후에는 수정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이며,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에 동시 해당될 시는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확정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19. 3. 29.(금)	‘19. 4. 8.(월) ~ ‘19. 4. 10.(수)	‘19. 4. 26.(금)	‘19. 5. 8.(수) ~ ‘19. 5. 10.(금)	‘19. 8. 2.(금)	‘19. 8. 26.(월) ~ ‘19. 8. 30.(금)

※ 현장 여건상 단지별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인터넷 청약기간 : 2019. 4. 8.(월) 10:00 ~ 2019. 4. 10.(수) 17:00

※ 방문 청약기간 : 2019. 4. 8.(월) ~ 2019. 4. 10.(수) 10:00~17:00

※ 소득 · 자산 · 자동차 · 주택 소명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공급현황

❖ 공급호수 및 면적

연번	단지명	공급유형(㎡)	공급호수	우선공급	일반공급	세대 당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입주(예정)	공급세대 최고층수	난방방식
총 계			**1,743**	**874**	**869**							
신규공급 합계			**1,743**	**874**	**869**							
1	소계		229	114	115							
	신내 글로리움 [신내동640] (중랑구 신내동)	36A	118	60	80	36.36	22.43	24.74	83.53	2019.11.	24	지역난방
		36B	18			36.3	22	24.72	83.02			
		36AS	4			36.36	22.43	24.74	83.53			
		44A	66	54	35	44.68	27.07	30.42	102.17			
		44B	4			44.76	27.02	30.48	102.26			
		44BS	3			44.76	27.02	30.48	102.26			
		44CS	16			44.16	26.74	30.07	100.97			
2	소계		40	20	20							
	롯데캐슬 골든힐스 [길음3 촉진구역] (성북구 길음동)	59A	11	20	20	59.93	22.11	49.48	131.52	2019.11.	20	개별난방
		59B	4			59.97	22.64	49.51	132.12			
		59C	24			59.93	22.11	49.48	131.52			
		59T	1			59.93	22.11	49.48	131.52			
3	소계		35	17	18							
	연희파크 푸르지오 [연희1] (서대문구 연희동)	59	35	17	18	59.98	23.88	43.85	127.71	2019.11.	18	개별난방
4	소계		47	23	24							
	DMC센트럴 아이파크 [남가좌1] (서대문구 남가좌동)	59A	28	23	24	59.91	25.22	40.17	125.3	2019.11.	21	개별난방
		59B	6			59.8	22.59	40.09	122.48			
		59C	13			59.99	22.22	40.22	122.43			
5	소계		4	4	0							
	백련산파크자이 [응암3] (은평구 응암동)	59A	4	4	0	59.9	19.36	45.54	124.8	2019.11.	14	개별난방
6	소계		9	9	0							
	마포웨스트리버 태영데시앙 [마포 창전1] (마포구 창전동)	59A	4	9	0	59.98	20.73	37.56	118.27	2019.11.	5	개별난방
		59C	5			59.80	19.94	37.43	117.17			
7	소계		98	49	49							
	신촌숲 아이파크 [신수1] (마포구 신수동)	59A	60	49	49	59.75	25.88	39.99	125.62	2019.11.	27	지역난방
		59B	38			59.37	26.19	39.74	125.30			
8	소계		56	28	28							
	e편한세상 염창 [염창1] (강서구 염창동)	51A	49	28	28	51.75	19.27	34.29	105.31	2019.11.	18	개별난방
		51B	7			51.51	21.51	34.13	107.15			

연번	단지명	공급유형(㎡)	공급호수	우선공급	일반공급	세대 당 계약면적 (㎡)				입주(예정)	공급세대 최고층수	난방방식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9	소계		156	78	78							
	래미안 명일역솔베뉴 [삼익그린] (강동구 명일동)	49A	22	56	56	49.66	19.88	36.88	106.42	2019.11.	30	개별난방
		49B	37			49.62	20.74	36.85	107.21			
		49C	53			49.68	20.21	36.9	106.79			
		59A	22	22	22	59.11	24.59	43.9	127.6			
		59B	22			59.25	24.85	44.01	128.11			
10	소계		140	70	70							
	고덕 그라시움 [고덕2] (강동구 고덕동)	59A	71	70	70	59.79	22.76	50.05	132.6	2019.11.	17	지역난방
		59B	5			59.51	23.09	49.82	132.42			
		59C	49			59.02	23.37	49.42	131.81			
		59D	15			59.05	23.31	49.43	131.79			
11	소계		47	23	24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봉천12-2] (관악구 봉천동)	50	21	10	11	50.24	21.6	40.89	112.73	2019.11.	7	개별난방
		59A(1)	9	13	13	59.9	22.18	36.82	118.9			
		59A(2)	5			59.9	22.7	36.12	118.72			
		59B	4			59.88	22.71	36.11	118.7			
		59C	2			59.96	20.88	36.86	117.7			
		59D(1)	3			59.96	22.02	36.86	118.84			
		59D(2)	3			59.96	22.19	36.15	118.3			
12	소계		85	42	43							
	디에이치 아너힐즈 [개포주공3] (강남구 개포동)	49A	16	42	43	49.4	18.14	41.92	109.46	2019.11.	7	개별난방
		49B	69			49.4	18.19	41.92	109.51			
13	소계		71	35	36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신반포18차, 24차] (서초구 잠원동)	48	28	19	9	48.48	22.83	41.68	112.99	2019.11.	28	지역난방
		59A	18	16	27	59.95	26.26	51.55	137.76			
		59B	25			59.92	25.99	51.53	137.44			
14	소계		41	15	26							
	방배아트자이 [방배3] (서초구 방배동)	59A	10	15	26	59.99	20.57	66.97	147.53	2019.11.	11	개별난방
		59B	23			59.98	20.77	66.96	147.71			
		59C	8			59.9	20.68	66.88	147.46			
15	소계		5	5	0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 [상도대림] (동작구 상도동)	59A	3	5	0	59.78	24.85	37.45	122.08	2019.11.	20	개별난방
		59C	2			59.59	25.11	37.33	122.03			
16	소계		16	16	0							
	휘경SK뷰 [휘경2] (동대문구 휘경동)	59B	16	16	0	59.65	21.78	45.59	127.02	2019.11.	15	개별난방

연번	단지명	공급유형(㎡)	공급호수	우선공급	일반공급	세대 당 계약면적 (㎡)				입주(예정)	공급세대 최고층수	난방방식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17	소계		88	44	44							
	꿈의숲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미아9-1] (강북구 미아동)	46	44	44	44	46.68	15.69	35.95	98.32	2019.11.	12	개별난방
		49	44			49.48	16.16	38.11	103.75			
18	소계		36	18	18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 [면목1] (중랑구 면목동)	59C	36	18	18	59.98	20.73	43.61	124.32	2019.11.	9	개별난방
19	소계		119	59	60							
	강일2준주거1 (강동구 강일동)	28	49	36	25	28.14	16.02	15.88	60.04	2019.12.	12	지역난방
		28S	12			28.01	16.09	15.81	59.91			
		38	58	23	35	38.49	21.2	21.72	81.41			
20	소계		7	7	0							
	학수경로당 (동작구 사당동)	20A	2	7	0	20.99	12.5	–	33.49	2019.11.	4	개별난방
		20B	2			20.88	12.64	–	33.52			
		21	3			21.24	12.79	–	34.03			
21	소계		25	12	13							
	래미안 길음센터피스 [길음2촉진구역] (성북구 길음동)	33A	25	12	13	33.46	13.62	21.13	68.21	2019.11.	20	개별난방
22	소계		48	24	24							
	래미안 아트리치 [석관2] (성북구 석관동)	39	48	24	24	39.01	23.69	34.42	97.12	2019.11.	18	개별난방
23	소계		52	26	26							
	홍제센트럴 아이파크 [홍제2] (서대문구 홍제동)	34	52	26	26	34.89	15.55	22.35	72.79	2019.11.	15	개별난방
24	소계		133	62	71							
	래미안 베라힐즈 [녹번1-2] (은평구 녹번동)	38	100	29	71	38.28	18.84	24.75	81.87	2019.11.	19	개별난방
		43A	29	33	0	43.74	24.72	28.31	96.77			
		43B	4			43.34	21.18	28.03	92.55			
25	소계		28	14	14							
	마포자이3차 [염리2] (마포구 염리동)	34	28	14	14	34.79	17.83	30.87	83.49	2019.11.	18	개별난방
26	소계		7	7	0							
	아크로리버하임 [흑석7] (동작구 흑석동)	39	7	7	0	39.77	14.54	23.49	77.8	2019.11.	15	개별난방
27	소계		7	0	7							
	롯데캐슬 에듀포레 [흑석8] (동작구 흑석동)	39	7	0	7	39.78	21.17	32.58	93.53	2019.11.	12	개별난방

연번	단지명	공급유형(㎡)	공급호수	우선공급	일반공급	세대 당 계약면적(㎡)				입주(예정)	공급세대 최고층수	난방방식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28	소계		55	24	31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신길14] (영등포구 신길동)	39	31	0	31	39.73	18.06	25.05	82.84	2019.11.	28	개별난방
		49	24	24	0	49.68	22.17	31.34	103.19			
29	소계		34	17	17							
	답십리파크자이 [답십리14] (동대문구 답십리동)	33	32	17	15	33.05	13.94	22.12	69.11	2019.11.	13	개별난방
		45	2	0	2	45.38	18.01	30.37	93.76			
30	소계		25	12	13							
	롯데캐슬 센터포레 [효창5] (용산구 효창동)	38	25	12	13	38.17	18.15	29.81	86.13	2019.11.	13	개별난방

* **롯데캐슬골든힐스(길음3촉진구역), 연희파크푸르지오(연희1), DMC센트럴아이파크(남가좌1), 백련산파크자이(응암3), 마포웨스트리버태영데시앙(마포창전1), 신촌숲아이파크(신수1), e편한세상염창(염창1), 래미안명일역솔베뉴(삼익그린), 고덕그라시움(고덕2),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봉천12-2),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신반포18차, 24차), 방배아트자이(방배3),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상도대림), 휘경SK뷰(휘경2),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미아9-1),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면목1)**는 서울특별시 재건축 매입형 단지입니다.

* **강일2준주거1**은 ㈜서울리츠임대주택 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1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학수경로당(사당동177-1), 래미안길음센터피스(길음2촉진구역), 래미안아트리치(석관2), 홍제센트럴아이파크(홍제2), 래미안베라힐즈(녹번1-2), 마포자이3차(염리2), 아크로리버하임(흑석7), 롯데캐슬에듀포레(흑석8), 신길뉴타운아이파크(신길14), 답십리파크자이(답십리14), 롯데캐슬센터포레(효창5)**는 ㈜서울리츠임대주택 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2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급유형별 구조

연번	단지명	구조
1	신내글로리움(신내동640)	철근콘크리트구조
2	롯데캐슬골든힐스(길음3촉진구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및 라멘구조
3	연희파크푸르지오(연희1)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DMC센트럴아이파크(남가좌1)	라멘구조(지하층) 및 벽식구조(지상층)
5	백련산파크자이(응암3)	철근콘크리트구조
6	마포웨스트리버태영데시앙(마포창전1)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7	신촌숲아이파크(신수1)	철근콘크리트구조
8	e편한세상염창(염창1)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9	래미안명일역솔베뉴(삼익그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PC복합구조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10	고덕그라시움(고덕2)	무량판구조
11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봉천12-2)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2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3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신반포18차, 24차)	철근콘크리트 및 PC복합구조
14	방배아트자이(방배3)	콘크리트벽식구조
15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상도대림)	철근콘크리트구조
16	휘경SK뷰(휘경2)	철근콘크리트구조
17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미아9-1)	철근콘크리트구조
18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면목1)	철근콘크리트구조
19	강일2준주거1	철근콘크리트구조
20	학수경로당(사당동177-1)	철근콘크리트구조
21	래미안길음센터피스(길음2촉진구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2	래미안아트리치(석관2)	철근콘크리트 RC + FC 복합화구조
23	홍제센트럴아이파크(홍제2)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24	래미안베라힐즈(녹번1-2)	철근콘크리트 RC + PC 복합화구조
25	마포자이3차(염리2)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26	아크로리버하임(흑석7)	철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27	롯데캐슬에듀포레(흑석8)	철근콘크리트구조
28	신길뉴타운아이파크(신길14)	철근콘크리트구조
29	답십리파크자이(답십리14)	철근콘크리트구조
30	롯데캐슬센터포레(효창5)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공급대상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신내글로리움	서울주택도시공사 (218-82-00136)	(주)옥토 외	-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롯데캐슬골든힐스	서울특별시	롯데건설(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가람건축사사업소
연희파크푸르지오	서울특별시	(주)대우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신한건축사사무소
DMC센트럴아이파크	서울특별시	HDC현대산업개발(주)	-	선엔지니어링
백련산파크자이	서울특별시	GS건설(주)	-	도원엔지니어링 예다종합설계감리 세정이에프씨
마포웨스트리버태영데시앙	서울특별시	(주)태영건설	-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신촌숲아이파크	서울특별시	HDC현대산업개발(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e편한세상염창	서울특별시	대림산업(주)	-	(주)해밀씨엠

공급대상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서울특별시	삼성물산(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가람건축 (주)경민엔지리어링 (주)건창기술단
고덕그라시움	서울특별시	(주)대우건설, 현대건설(주), SK건설(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유원건축사사무소 (주)한국전설엔지니어링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서울특별시	대림산업(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이치아너힐즈	서울특별시	현대건설(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동일건축 (주)유원건축사사무소 한방유비스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서울특별시	삼성물산(주)	–	(주)성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방배아트자이	서울특별시	GS건설(주)	건설공제조합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서울특별시	대림산업(주)	–	(주)유원건축사사무소
휘경SK뷰	서울특별시	SK건설(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단A&C 종합건축사사무소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주)효성중공업, (주)진흥기업	–	(주)우정유빅스엔지니어링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	서울특별시	(주)한양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유원이앤에프 주식회사
강일2준주거1	서울리츠1호	(주)보미건설, (주)케이알산업	–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학수경로당	서울리츠2호		–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서울리츠2호	삼성물산(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동우E&C
래미안아트리치	서울리츠2호	삼성물산(주)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주)건창기술단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서울리츠2호	HDC현대산업개발(주)	–	(주)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유원이앤에프(주)
래미안베라힐즈	서울리츠2호	삼성물산(주)	–	중앙엔지니어링(주)
마포자이3차	서울리츠2호	GS건설(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세정감리 (주)하일기술단
아크로리버하임	서울리츠2호	대림산업(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우정유빅스 (주)태양유닉스 (주)지여이엔씨
롯데캐슬에듀포레	서울리츠2호	롯데건설(주)	–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주)세광티이씨
신길뉴타운아이파크	서울리츠2호	HDC현대산업개발(주)	–	청화종합관리공단건축사무소 (주)세광티이씨 (주)진일기술단
답십리파크자이	서울리츠2호	GS건설(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이지건축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롯데캐슬센터포레	서울리츠2호	롯데건설(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하일기술단 (주)지케이이엔지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단지명	신청유형(㎡)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구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신청자격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보증금(천원)	임대료(원)
				계	우선	일반	계	계약금(20%)	잔금(80%)	월임대료(원)		
신내 글로리움 [신내동 640] (중랑구 신내동)	36	대학생 계층		10	10	0	51,000	10,200	40,800	234,000	(+)	74,400	117,000
											(–)	25,500	319,000
		청년계층	소득이 없는 청년	100	40	60	51,000	10,200	40,800	234,000	(+)	74,400	117,000
											(–)	25,500	319,000
			소득이 있는 청년				54,000	10,800	43,200	248,000	(+)	78,800	124,000
											(–)	27,000	338,000
		고령자		20	0	20	57,000	11,400	45,600	261,000	(+)	83,100	130,500
											(–)	28,500	356,000
		주거급여수급자		6	6	0	45,000	9,000	36,000	206,000	(+)	65,600	103,000
											(–)	22,500	281,000
	36S	고령자		4	4	0	57,000	11,400	45,600	261,000	(+)	83,100	130,500
											(–)	28,500	356,000
	44	신혼부부 계층		70	35	35	70,000	14,000	56,000	321,000	(+)	102,100	160,500
											(–)	35,000	437,600
	44S	고령자		19	19	0	66,500	13,300	53,200	305,000	(+)	97,000	152,500
											(–)	33,250	415,800
롯데캐슬 골든힐스 [길음3촉진구역] (성북구 길음동)	59	신혼부부 계층		40	20	20	88,500	17,700	70,800	376,000	(+)	126,100	188,000
											(–)	44,250	523,500
연희파크 푸르지오 [연희1] (서대문구 연희동)	59	신혼부부 계층		35	17	18	93,200	18,640	74,560	404,000	(+)	133,600	202,000
											(–)	46,600	559,300
DMC센트럴 아이파크 [남가좌1] (서대문구 남가좌동)	59	신혼부부 계층		30	6	24	94,800	18,960	75,840	411,000	(+)	135,900	205,500
											(–)	47,400	569,000
		고령자		17	17	0	90,000	18,000	72,000	390,000	(+)	129,000	195,000
											(–)	45,000	540,000
백련산파크 자이 [응암3] (은평구 응암동)	59	신혼부부 계층		4	4	0	86,000	17,200	68,800	351,000	(+)	121,100	175,500
											(–)	43,000	494,300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데시앙 [마포 창전1] (마포구 창전동)	59	신혼부부 계층		9	9	0	127,100	25,420	101,680	519,000	(+)	179,000	259,500
											(–)	63,550	730,800
신촌숲 아이파크 [신수1] (마포구 신수동)	59	신혼부부 계층		80	31	49	129,100	25,820	103,280	527,000	(+)	181,800	263,500
											(–)	64,550	742,100
		고령자		18	18	0	122,700	24,540	98,160	501,000	(+)	172,800	250,500
											(–)	61,350	705,500
e편한세상 염창 [염창1] (강서구 염창동)	51	신혼부부 계층		26	13	13	98,300	19,660	78,640	393,000	(+)	137,600	196,500
											(–)	49,150	556,800
		고령자		30	15	15	93,500	18,700	74,800	374,000	(+)	130,900	187,000
											(–)	46,750	529,800

단지명	신청유형(㎡)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구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신청자격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보증금(천원)	임대료(원)
			계	우선	일반	계	계약금(20%)	잔금(80%)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삼익그린] (강동구 명일동)	49	신혼부부 계층	70	35	35	103,300	20,660	82,640	370,000	(+)	140,300	185,000
										(–)	51,650	542,100
		고령자	42	21	21	98,000	19,600	78,400	351,000	(+)	133,100	175,500
										(–)	49,000	514,300
	59	신혼부부 계층	44	22	22	123,100	24,620	98,480	441,000	(+)	167,200	220,500
										(–)	61,550	646,100
고덕 그라시움 [고덕2] (강동구 고덕동)	59	신혼부부 계층	110	55	55	122,800	24,560	98,240	440,000	(+)	166,800	220,000
										(–)	61,400	644,600
		고령자	30	15	15	116,700	23,340	93,360	418,000	(+)	158,500	209,000
										(–)	58,350	612,500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봉천12–2] (관악구 봉천동)	50	고령자	21	10	11	84,700	16,940	67,760	346,000	(+)	119,300	173,000
										(–)	42,350	487,100
	59	신혼부부 계층	26	13	13	103,800	20,760	83,040	424,000	(+)	146,200	212,000
										(–)	51,900	597,000
디에이치 아너힐즈 [개포주공3] (강남구 개포동)	49	신혼부부 계층	85	42	43	130,400	26,080	104,320	489,000	(+)	179,300	244,500
										(–)	65,200	706,300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신반포18차, 24차] (서초구 잠원동)	48	신혼부부 계층	18	9	9	140,700	28,140	112,560	504,000	(+)	191,100	252,000
										(–)	70,350	738,500
		고령자	10	10	0	133,700	26,740	106,960	479,000	(+)	181,600	239,500
										(–)	66,850	701,800
	59	신혼부부 계층	43	16	27	173,000	34,600	138,400	620,000	(+)	235,000	310,000
										(–)	86,500	908,300
방배아트자이 [방배3] (서초구 방배동)	59	신혼부부 계층	41	15	26	165,200	33,040	132,160	592,000	(+)	224,400	296,000
										(–)	82,600	867,300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 [상도대림] (동작구 상도동)	59	신혼부부 계층	5	5	0	113,200	22,640	90,560	481,000	(+)	161,300	240,500
										(–)	56,600	669,600
휘경SK뷰 [휘경2] (동대문구 휘경동)	59	신혼부부 계층	16	16	0	89,700	17,940	71,760	411,000	(+)	130,800	205,500
										(–)	44,850	560,500
꿈의숲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미아9–1] (강북구 미아동)	46	신혼부부 계층	30	15	15	62,800	12,560	50,240	293,000	(+)	92,100	146,500
										(–)	31,400	397,600
		고령자	14	0	14	59,600	11,920	47,680	278,000	(+)	87,400	139,000
										(–)	29,800	377,300
	49	신혼부부 계층	44	29	15	66,900	13,380	53,520	312,000	(+)	98,100	156,000
										(–)	33,450	423,500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 [면목1] (중랑구 면목동)	59	신혼부부 계층	36	18	18	99,800	19,960	79,840	391,000	(+)	138,900	195,500
										(–)	49,900	557,300

단지명	신청유형(㎡)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구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신청자격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보증금(천원)	임대료(원)
				계	우선	일반	계	계약금(20%)	잔금(80%)				
강일2준주거1 (강동구 강일동)	28	청년계층	소득이 없는 청년	49	24	25	27,572	5,514	22,058	180,000	(+)	34,770	144,000
											(–)	22,050	198,400
			소득이 있는 청년				29,194	5,838	23,356	190,000	(+)	36,790	152,000
											(–)	23,350	209,400
	28S	고령자		12	12	0	30,816	6,163	24,653	201,000	(+)	38,850	160,800
											(–)	24,650	221,500
	38	신혼부부 계층		46	23	23	42,415	8,483	33,932	277,000	(+)	53,490	221,600
											(–)	33,930	305,200
		고령자		12	0	12	40,294	8,058	32,236	263,000	(+)	50,810	210,400
											(–)	32,230	289,800
학수경로당 (동작구 사당동)	20	대학생 계층		7	7	0	43,828	8,765	35,063	153,400	(+)	49,960	122,700
											(–)	35,060	182,600
래미안 길음센터피스 [길음2촉진구역] (성북구 길음동)	33	청년계층	소득이 없는 청년	25	12	13	58,130	11,626	46,504	208,300	(+)	66,470	166,600
											(–)	46,500	247,000
			소득이 있는 청년				61,562	12,312	49,250	220,600	(+)	70,400	176,400
											(–)	49,240	261,600
래미안 아트리치 [석관2] (성북구 석관동)	39	신혼부부 계층		48	24	24	77,972	15,594	62,378	279,400	(+)	89,150	223,500
											(–)	62,370	331,400
홍제센트럴아이파크 [홍제2] (서대문구 홍제동)	34	청년계층	소득이 없는 청년	52	26	26	67,142	13,428	53,714	235,000	(+)	76,540	188,000
											(–)	53,710	279,700
			소득이 있는 청년				71,114	14,222	56,892	248,900	(+)	81,070	199,100
											(–)	56,890	296,300
래미안 베라힐즈 [녹번1–2] (은평구 녹번동)	38	청년계층	소득이 없는 청년	30	15	15	65,714	13,142	52,572	230,000	(+)	74,910	184,000
											(–)	52,570	273,800
			소득이 있는 청년				69,600	13,920	55,680	243,600	(+)	79,360	194,800
											(–)	55,680	290,000
		신혼부부 계층		56	0	56	77,314	15,462	61,852	270,600	(+)	88,150	216,400
											(–)	61,850	322,100
		고령자		14	14	0	73,457	14,691	58,766	257,100	(+)	83,750	205,600
											(–)	58,760	306,000
	43	신혼부부 계층		33	33	0	88,000	17,600	70,400	308,000	(+)	100,320	246,400
											(–)	70,400	366,600
마포자이3차 [염리2] (마포구 염리동)	34	청년계층	소득이 없는 청년	28	14	14	80,542	16,108	64,434	281,900	(+)	91,820	225,500
											(–)	64,430	335,600
			소득이 있는 청년				85,285	17,057	68,228	298,500	(+)	97,220	238,800
											(–)	68,220	355,300
아크로리버하임 [흑석7] (동작구 흑석동)	39	신혼부부 계층		7	7	0	105,571	21,114	84,457	369,500	(+)	120,350	295,600
											(–)	84,450	439,900
롯데캐슬 에듀포레 [흑석8] (동작구 흑석동)	39	고령자		7	0	7	96,685	19,337	77,348	338,400	(+)	110,220	270,700
											(–)	77,340	402,800

단지명	신청유형(㎡)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구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신청자격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보증금(천원)	임대료(원)
				계	우선	일반	계	계약금(20%)	잔금(80%)	월임대료(원)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신길14] (영등포구 신길동)	39	신혼부부 계층		31	0	31	90,028	18,005	72,023	315,100	(+)	102,640	252,000
											(-)	72,020	375,100
	49	신혼부부 계층		13	13	0	111,771	22,354	89,417	391,200	(+)	127,430	312,900
											(-)	89,410	465,700
		고령자		11	11	0	106,171	21,234	84,937	371,600	(+)	121,050	297,200
											(-)	84,930	442,400
답십리파크자이 [답십리14] (동대문구 답십리동)	33	청년계층	소득이 없는 청년	32	17	15	60,279	12,055	48,224	216,000	(+)	68,910	172,800
											(-)	48,220	256,100
			소득이 있는 청년				63,823	12,764	51,059	228,700	(+)	72,980	182,900
											(-)	51,050	271,200
	45	신혼부부 계층		2	0	2	96,530	19,306	77,224	345,900	(+)	110,370	276,700
											(-)	77,220	410,200
롯데캐슬 센터포레 [효창5] (용산구 효창동)	38	신혼부부 계층		25	12	13	94,382	18,876	75,506	361,800	(+)	108,860	289,400
											(-)	75,500	424,700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신청유형의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의 유무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며, 당첨 이후 도래한 계약 시점에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수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신내글로리움(신내동640)**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후 공급합니다.
- **강일2준주거1**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서울리츠1호가 건설한 후 공급합니다.
- **학수경로당(사당동177-1)**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서울리츠2호**가 건설한 후 공급합니다.
- 래미안길음센터피스(길음2촉진구역), 래미안아트리치(석관2), 홍제센트럴아이파크(홍제2), 래미안베라힐즈(녹번1-2), 마포자이3차(염리2) 아크로리버하임(흑석7), 롯데캐슬에듀포레(흑석8), 신길뉴타운아이파크(신길14), 답십리파크자이(답십리14), 롯데캐슬센터포레(효창5)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서울리츠2호**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입주예정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구분 없이 신청접수 합니다.
  (※ 주거약자용 타입은 고령자 계층에게 별도로 공급합니다.)

단지명	주거약자용 타입
신내글로리움	36AS, 36BS, 36CS
강일2준주거1	28S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내글로리움의 36AS, 36BS, 36CS 타입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하며, 해당 단지별로 타입 구분 없이 36S형으로 통합하여 신청접수를 받은 후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모든 공급 주택은 면적 별로 각각 서로 다른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공급 시에는 별도의 선택 없이 접수를 받은 후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에게 배정됩니다.
-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및 유의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면적에 벽체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MDF실, 방재실,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공사 방침에 따라 미달된 계층의 모집호수를 초과된 계층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로 타입 구분 없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합니다. (단, 계층별로는 상이합니다.)
- 입주 시에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1층~3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사업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인 주택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가능하고, 사업주체가 서울리츠1호 및 서울리츠2호인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 이율은 모든 주택이 4.0%로 동일합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사업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인 주택의 경우는 임대료의 50%까지 전환가능하고, 사업주체가 서울리츠1호 및 서울리츠2호인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 이율은 모든 주택이 6.0%로 동일합니다.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단지별 · 해당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 및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위치는 공고문 43p ~ 50p 약도를 참조)
- 위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행복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단지 · 평형 · 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지역센터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공급 순위는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단,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및 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사회초년생 일반자격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와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시점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청약이 허용되는 사항이 있으니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6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P)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방법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라항'에 의거하여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자에 대해 아래 계층별 해당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별도의 순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 대학생 계층의 해당지역 :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취업준비생의 경우 거주지)

– 청년, 신혼부부(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계층의 해당지역 : 거주지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하남시 · 성남시 · 과천시 · 안양시 · 광명시 · 부천시 · 인천광역시 · 김포시 · 고양시 · 양주시)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수원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 여주시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별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로 접수하여 아래 유형별 우선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기준의 배점을 합산하여 배점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배점이 같은 경우 유형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우선선정 기준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공급합니다.

2-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29. 기준)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 계층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계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하며, 졸업유예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시 일반자격 미충족으로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하남시 · 성남시 · 과천시 · 안양시 · 광명시 · 부천시 · 인천광역시 · 김포시 · 고양시 ·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수원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 여주시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학중인 대학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합니다.

※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을 취업준비생은 거주지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 모두 해당자치구 외에 거주해야함)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6. 3. 29.(당일포함) 이전인 자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6. 3. 30.(당일포함) 이후인 자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 항목은 우선공급 1순위로 신청한 분에게만 적용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추첨
	2순위	순위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2-2 청년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79. 3. 30. ~ 2000. 3. 29.)

①-㉯ **(사회초년생)** (1979. 3. 29. 이전 출생 또는 2000. 3. 30. 이후 출생인 자 포함)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①-㉯**1)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는 포함합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이내인자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종사중인 업무에 종사한 기간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그 전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2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019. 3. 29.)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며, 첫 직장일 경우 2014년 3월 30일(포함) 이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신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826일 이상일 경우 신청자격 미충족으로 결격처리 됩니다.**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단지의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기준)이 적용됩니다.**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①-㉯3)의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행복주택에 청년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청년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 계층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계층 입주자는 '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며(**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신청유형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이므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를 '거주지'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이므로 청약 시 '소득없음'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하남시 · 성남시 · 과천시 · 안양시 · 광명시 · 부천시 · 인천광역시 · 김포시 · 고양시 ·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수원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 여주시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6. 3. 29.(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6. 3. 30.(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2-3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자녀가 2012. 3. 30.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합니다.(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이내인 자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뿐만이 아니라 재혼을 하였을 경우 재혼 전의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019. 3. 29.) 기준으로 혼인 중이며 초혼일 경우 2012년 3월 30일(당일 포함) 이후에 혼인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2,556일 이상일 경우 신청자격 미충족으로 결격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예비신혼 부부의 입주자격 중 혼인 합산 기간인 ②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한 경우의 신혼부부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 계층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 신청 후 등록전인 경우에도 신청 불가)

※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계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태아만 있을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로 확인)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하남시 · 성남시 · 과천시 · 안양시 · 광명시 · 부천시 · 인천광역시 · 김포시 · 고양시 ·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수원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 여주시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활동소재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으로만 신청이 가능)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에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6. 3. 29.(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에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6. 3. 30.(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배점은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및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배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2-4 고령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4. 03. 29.(당일포함)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령자로 신청하는 세대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2018. 3. 29.(당일포함) 이전 양도한** 경우 신청가능)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 ~만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4. 3. 29.(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4. 3. 30.(당일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2-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합니다.(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세대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2018. 3. 29.(당일포함)이전 양도한** 경우 신청가능)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3.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4. 3. 29.(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4. 3. 30.(당일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다음의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도 포함합니다.(단, 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만 포함)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일반공급 순위는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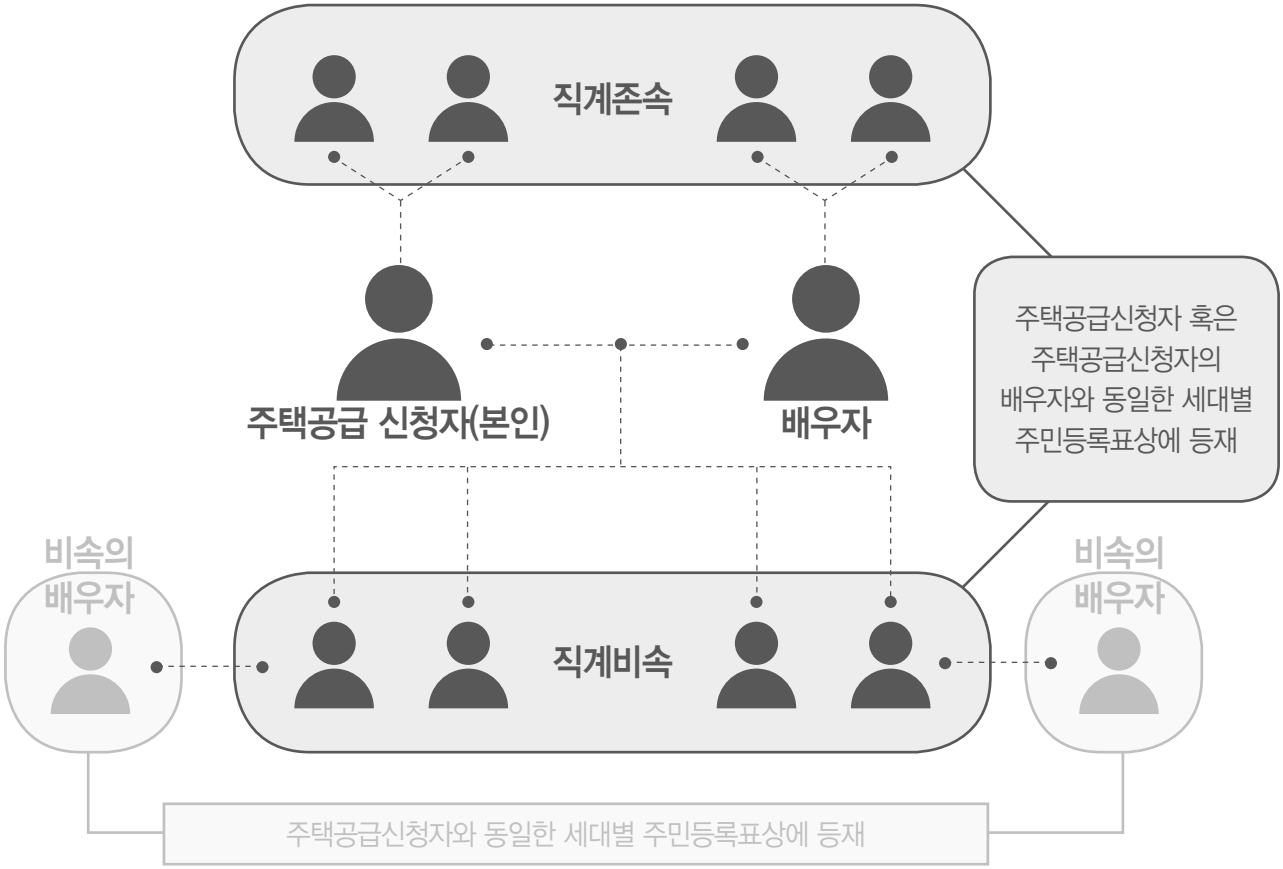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

– 주택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명방법: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민원회신문(공문)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⑨ 매매 외 상속 ·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table>
<tr><th>구 분</th><th>소 득 기 준</th></tr>
<tr><td>소 득</td><td>○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3인이하</th><th>4인</th><th>5인</th></tr>
<tr><td>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td><td>청년 계층 (본인)</td><td>4,321,451원</td><td>4,932,162원</td><td>5,359,892원</td></tr>
<tr><td rowspan="4">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td><td>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td><td rowspan="4">5,401,814원</td><td rowspan="4">6,165,202원</td><td rowspan="4">6,699,865원</td></tr>
<tr><td>청년 계층 (세대원이 있는 경우)</td></tr>
<tr><td>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td></tr>
<tr><td>고령자</td></tr>
</table>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519,221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만 해당됩니다.(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 청년 계층은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 본인의 월평균소득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100%퍼센트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td></tr>
</table>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7,5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3,2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28,000만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자산 기준</th></tr>
<tr><td>총
자산</td><td>부동산</td><td>•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며, 단,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td></tr>
</table>

구분		자산 기준
총 자산	부동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 · 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3 신청접수 안내

○ **신청접수 일정: 2019. 4. 8.(월) 10:00 ~ 2019. 4. 10.(수) 17:00**

○ **청약방법: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오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가정,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청약은 2019. 4. 8.(월) 10:00부터 2019. 4. 10.(수) 17:00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인터넷 청약 접수(고령자 및 장애인만 해당)는 **2019.04.08.(월) ~ 2019.04.10.(수) (10:00 ~ 17:00)**에만 운영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접수 첫날 오전은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는 서류 심사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종료 후에는 해당자격, 우선공급 순위, *자치구최종전입일 또는 *서울시최종전입일, *청약저축은행명, 청약저축납입인정횟수, 가점사항 등의 수정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예시1-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자치구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 자치구가 서초구일 경우**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3. 1. 1.	**2013. 1. 4.**	**서초구 A아파트**
2016. 12. 6.	2016. 12. 8.	서초구 B오피스텔
2017. 5. 25.	2017. 5. 23.	서초구 C빌라

– 2013년 1월 1일 서초구로 전입 후 같은 자치구 내에서 다른 거주지로 2016년 12월 6일, 2017년 5월 25일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초구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자치구 최종전입일은 **2013년 1월 1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예시1-2)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자치구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 자치구가 서초구일 경우**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3. 1. 1.	2013. 1. 4.	서초구 A아파트
2016. 12. 6.	2016. 12. 8.	강서구 B오피스텔
2017. 5. 25.	**2017. 5. 23.**	**서초구 C빌라**

– 2013년 1월 1일 서초구로 전입 후 다른 자치구인 강서구로 전입하였다가 2017년 5월 25일 다시 서초구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초구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자치구 최종전입일은 **2017년 5월 23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예시2-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같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2014년 7월 25일, 2015년 12월 14일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2년 1월 4일**입니다.(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예시2-2)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경기도 수원시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입니다.(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예시3)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점 기재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점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0회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를 통해 조회된 납입회차를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1달에 1번 순위발생일에만 인정되며, 2019년 2월까지 납입하신 회차까지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차별납입인정일은 입금약정일 + (지연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회차로 인정되며, 순위약정일과 납입인정일 중 늦은 일자가 순위발생일이 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자치구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 거주기간 산정 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사항은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일부터 기산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 소득 · 자동차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동차, 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니,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란에 서명하셔서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신청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신청가능(마감시간 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자격요건(해당신청자격, 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우선공급순위, 가점사항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서울시(자치구) 최종전입일, 가점사항 등〕 서류심사 시 해당가점이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처리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해 주십시오.)

➡ **청약시 본인 착오 또는 상담시 착오 안내 등으로 인해 본인의 기입한 내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형평성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 및 소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 3단계(신청자격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공인인증서 인증확인)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신청시간**

– **신청기간**은 **2019. 4. 8.(월) 10:00 ~ 4. 10.(수) 17:00**이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본인이 해당하는 우선, 일반공급에 제대로 신청하셨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해당자가 착오로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시 절대 변경 불가)

나. 방문인터넷 신청안내 → 방문고객이 많아 가정에서 인터넷 신청요망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받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방문인터넷 신청 대상자 :** 고령자 및 장애인 중 인터넷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자

○ **방문인터넷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방문인터넷 신청기간 : 2019. 4. 8.(월) ~ 4. 10.(수) [10:00 ~ 17:00]**

○ **청약방법 :** 공사에 설치된 컴퓨터는 공사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여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도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공급신청 위임장을 작성(청약을 위임)할 경우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장시간 소요 예상됨)할 예정입니다.

※ 청약 위임시 제출서류

– 본인 신청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3자 신청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1통,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위임장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방문신청시 숙지사항 : 해당자격, 우선공급신청시 해당 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자치구최종전입일 및 서울시최종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 등을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 방문신청시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상세)을 발급받아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이 없는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 최종전입일을 확인할 수 없어 방문신청이 불가합니다.)

4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구분	내용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9. 4. 26.(금)** **– 조회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서류심사대상자 조회하기, 공고 및 공지 게시판, ARS 서류심사 대상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신청순위 및 가점 순서대로 3배수 내외로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됩니다. (동일 순위 및 배점은 무작위추첨에 의해 결정)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방법〉 1. 우선공급신청자 중 우선공급 당첨자 수의 3배수 내외 선정 2. 일반공급신청자 중 일반공급 당첨자 수의 3배수 내외 선정 (우선공급신청자 중 서류심사대상자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19. 5. 8.(수) ~ 2019. 5. 10.(금) 17:00**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별도의 연락 없이 탈락되므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심사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완서류 제출요청)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5월 12일 소인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임대부 행복주택 담당자 앞**
제출서류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 및 조회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국토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 예정입니다. **※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 가능)

5 심사서류 제출안내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9. 3. 29.)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23456–1******(X)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으시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제출 서류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에도 제출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1부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 심사서류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부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단,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에 산정되는 추가 세대구성원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만 추가 세대구성원도 서명(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는 미포함)]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단, 이 경우에도 전자서명 자체는 아이의 이름으로 할 것) • **동의방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이 서명(한글정자 서명) 또는 날인 (단, 금융정보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본	• **신청자의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이 안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1통

□ **기타 서류 ※ 방문서류제출시(방문제출 대상: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어려운 고령자 등)**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그 외의 자 신청 시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개별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을 위함)	주민센터
청년 계층	청년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소득업무 근거지'가 우선공급 1 · 2순위, 일반공급 1 · 2 · 3순위에 해당하는 자 : 아래 '해당자' 제출서류 확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아래의 해당하는 자격의 서류** – 재취업준비생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일 기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서**	해당학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고용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자	• 거주지가 아닌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일반공급 1 · 2 · 3순위, 우선공급1 ·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시 법인등기부등본 · 고유번호증 등) • 위의 해당하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위촉증명서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실제 근무소재지가 다른 경우 : 재직(퇴직)증명서 추가 제출(실제근무지 표시된 경우 인정)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경우 –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입주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해당센터에 청약통장(본인) 사본 제출	해당직장 국세청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병무청 해당은행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대표신청자가 공고일 기준 미혼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홈페이지 게시된 공사 양식) 제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표신청자에게 위임), 신청자 각각(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동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동일하게 서명하여 제출) [입주시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해당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거주지가 아닌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일반공급 1 · 2 · 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시 법인등기부등본 · 고유번호증 등) • 위의 해당하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위촉증명서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실제 근무소재지가 다른 경우: 재직(퇴직)증명서 추가 제출(실제근무지 표시된 경우 인정) [입주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해당센터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직장 국세청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해당은행
고령자계층		• **우선공급자 중 가점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 · 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자 중 가점대상자인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 · 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 · 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계층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해당자만 제출)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 · 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 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 · 항공기	선박 : 기선 · 범선 ·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상가 등을 소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주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일 경우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 상가 등의 임차인으로 전 · 월세를 내는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해당 없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6 최대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대학생, 청년 계층</td><td>6년</td></tr>
<tr><td>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r><td>한부모가족</td><td>10년</td></tr>
<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able>
■ 재계약 시 계층변경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 · 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후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절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대학생 계층뿐만 아니라 새로 변경한 계층인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청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계층으로 입주한 후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절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청년 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청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대학 소재지, 소득 근거지,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대학생계층의 대학생이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 자산, 주택소유, 기준 초과시 즉시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7년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td></tr>
</table>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td><td>■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거주 중 청년계층의 소득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추후 갱신계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단, 갱신 계약 시 자동차 · 자산 · 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리츠1,2호)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td></tr>
</table>

7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단,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고령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배정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이때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0. 8. 1. 까지입니다.)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19. 8. 2.(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ARS(1600-34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8 계약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 전자 계약 일시: **2019. 8. 26.(월) ~ 8. 29.(목) 10:00 ~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방문 계약 일시 : **2019. 8. 29.(목) ~ 8. 30.(금) 10:00 ~ 17:00**

○ 방문 계약 장소 : **해당 센터**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방문계약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전자계약을 대행할 예정이며 (본인이 직접 전자 수기서명하여 계약), 계약금입금 후 문자를 수신한 분만 계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 확인 후에 방문하기 바랍니다.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 만일 계약금을 납부했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 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② 본인도장(본인서명가능) *전자계약 불가능할 경우 도장 필요 ③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④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 (공사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대리계약 시도 포함

※ 소득 · 자동차 · 자산(금융자산 포함)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9 신청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만,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서류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마감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해당 관할지역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해당 관할지역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미통보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할지역센터에서 신청가능)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함
예비입주자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당첨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청약시 기재하지 못한 태아, 자녀수는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서 제외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입주 및 입주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 임차료 분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수급자도 해당) – 매월 납부해야하는 임차료에서 본인의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납부 금액이 없을 수 있음)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주거급여는 보장기관에서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단지 유의사항 안내

■ 공통사항 ■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공간)을 설치하여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대학생에게만 공급되는 일부 주택은 자격 요건상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 · 호수에 따라 전자팸플릿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 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 · 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야외 운동공간,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해당 단지만),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및 최초 2호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조합분양주택과 비교하여 일부 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개별사항 ■

○ 리츠2호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학수경로당(사당177-1)은 행복주택 복합화 건립사업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1 임대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 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공사게시판, ARS 조회(1600-3456)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 여건상 견본주택은 공개하지 않으며, 팸플릿[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 (홈페이지 : www.i-sh.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단지는 전자팸플릿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임대주택 위치 (※주소는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신내 글로리움 [신내동640]	롯데캐슬 골든힐스 [길음3촉진구역]
주소	신내동 640번지	성북구 정릉동 192
약도		

구분	연희파크 푸르지오 [연희1]	DMC센트럴 아이파크 [남가좌1]
주소	연희동 711번지 일대	남가좌동 369-10번지
약도		

구분	백련산파크 자이 [응암3]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데시앙 [마포 창전1]
주소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창전동 27-19번지 일대
약도		

구분	신촌숲 아이파크 [신수1]	e편한세상 염창 [염창1]
주소	신수동 93-102번지 일대	염창동 277-24번지 일대
약도		

구분	래미안 명일역솔베뉴 [삼익그린]	고덕 그라시움 [고덕2]
주소	명일동 309-1번지 일대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약도		

구분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봉천12-2]	디에이치 아너힐즈 [개포주공3]
주소	봉천동 1553-1번지 일원	개포동 138번지 일대
약도		

구분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신반포18차, 24차]	방배아트자이 [방배3]
주소	잠원동 52번지 일대	방배동 992-1번지 일대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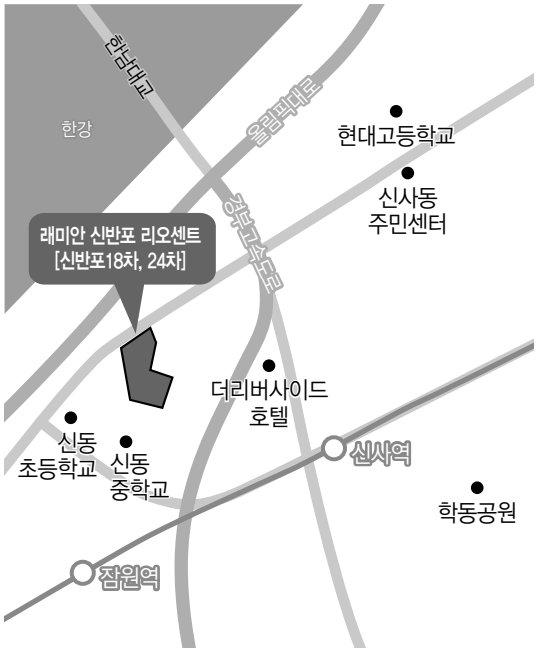	

구분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 [상도대림]	휘경SK뷰 [휘경2]
주소	상도동 36-1번지	휘경동 128-12번지 일원
약도		

구분	꿈의숲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미아9-1]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 [면목1]
주소	미아동 3-770번지 일대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약도		

구분	강일2준주거1	학수경로당
주소	강일동 730-2번지	사당동 177-1번지
약도		

구분	래미안 길음센터피스 [길음2촉진구역]	래미안 아트리치 [석관2]
주소	길음동 498번지	석관동 58-56번지 일대
약도		

구분	홍제센트럴아이파크 [홍제2]	래미안 베라힐즈 [녹번1-2]
주소	홍제동 156번지	녹번동 19번지
약도		

구분	마포자이3차 [염리2]	아크로리버하임 [흑석7]
주소	염리동 45번지 일원	흑석동 158-1번지
약도		

구분	롯데캐슬 에듀포레 [흑석8]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신길14]
주소	흑석동 232-55번지	신길동 347-50번지 일대
약도		

구분	답십리파크자이 [답십리14]	롯데캐슬 센터포레 [효창5]
주소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효창동 13번지
약도		

2019. 3. 29.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